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여성가족부에 정부 내 성평등 정책 협력·조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 및 위기청소년 보호·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을 각각 증원하는 등의 내용으로 「여성가족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19. 3.00. 공포·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고,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총액인건비제로 직급을 상향하였던 정원(5급) 1명을 종전의 직급(6급)으로 환원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2020년도 예산에 반영되었음

다. 합 의 : 기획재정부 및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신·구정원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0. 2.00. ~ 2.0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여성가족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여성가족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중 총계 “265”를 “268”로 하고, 1. 공무원 계(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은 제외한다) “259”를 “262”로 하며, 일반직 계 “255”를 “258”로 하고, 행정사무관·사회복지사무관·전산사무관·시설사무관·공업사무관·통계사무관 또는 기록연구관 “31”을 “33”으로, 행정주사·사회복지주사·전산주사·시설주사·공업주사·통계주사 또는 기록연구사 “20”을 “21”로 한다.

별표 2 중 총계 “267”을 “270”으로 하고, 1. 공무원 계(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은 제외한다) “261”을 “264”로 하며, 일반직 계 “257”을 “260”으로 하고, 행정사무관·사회복지사무관·전산사무관·시설사무관·공업사무관·통계사무관 또는 기록연구관 “34”를 “35”로, 행정주사·사회복지주사·전산주사·시설주사·공업주사·통계주사 또는 기록연구사 “17”을 “19”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정원대비표

[별표 1]

여성가족부 공무원 정원표(제9조제1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u>265</u>	<u>268</u>	+3
1. 공무원 계(시간선택제채용 공무원은 제외한다)	<u>259</u>	<u>262</u>	+3
·	·	·	
·	·	·	
일반직 계	<u>255</u>	<u>258</u>	+3
·	·	·	
·	·	·	
행정사무관 · 사회복지사 무관 · 전산사무관 · 시 설사무관 · 공업사무관 · 통계사무관 또는 기 록연구관	<u>31</u>	<u>33</u>	+2
·	·	·	
·	·	·	
행정주사 · 사회복지주사 · 전산주사 · 시설주사 · 공업주사 · 통계주사 또는 기록연구사	<u>20</u>	<u>21</u>	+1

	.	.	.
	.	.	.
	.	.	.
	.	.	.

[별표 2]

여성가족부 공무원 정원표(제9조제1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u>267</u>	<u>270</u>	+3
1. 공무원 계(시간선택제 채용 공무원은 제외한다)	<u>261</u>	<u>264</u>	+3
·	·	·	
·	·	·	
일반직 계	<u>257</u>	<u>260</u>	+3
·	·	·	
·	·	·	
행정사무관·사회복지사 무관·전산사무관·시 설사무관·공업사무관 ·통계사무관 또는 기 록연구관	<u>34</u>	<u>35</u>	+1
·	·	·	
·	·	·	
행정주사·사회복지주사 ·전산주사·시설주사 ·공업주사·통계주사 또는 기록연구사	<u>17</u>	<u>19</u>	+2
·	·	·	

•	•	•	
•	•	•	
•	•	•	